

●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6-6호

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4월 15일

새만금개발청장

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

1. 투자진흥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
가. 명칭: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

나. 위치: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·7·8공구(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)

다. 면적: 6.0km²

2.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

가. 내용: 제조업 등 투자자 유치(기업 등)

나. 투자규모: 약 8.7조원 규모의 투자 및 7,100여명의 고용창출 예상

3. 투자진흥지구의 개발방법

가. 사업시행자: 한국농어촌공사

나. 개발방법: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수립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·실시계획에 따라 개발